

의안번호	2210278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5. 8. 25.
추 계 번호	25B27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u>송아지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u>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송아지를 수매하여 가공·유통하도록 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토종유전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송아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8항 신설)	재량규정
2	제32조의5(축산물 자급률 확보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유전자원의 보호 및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제32조의6(가축경영안정사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축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을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제32조의7(도축·출하장려금의 지급)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사육농가가 수급정책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해당 사육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제33조의4(축산물의 소비 촉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축산물의 목표 소비량을 공개하게 하거나 홍보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송아지생산 안정사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32조의5(축산물 자 급률 확보 등) 신설	
3	제32조의6(가축경영안 정사업) 신설	
4	제32조의7(도축·출하 장려금의 지급) 신설	
5	제33조의4(축산물의 소비 촉진) 신설	

2. 상세 사유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안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하 “보전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하고 있음
- 보전금은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0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송아지 848,674마리에 대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 1,663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음
 - 2012년 이후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사례 없음
 - (지원내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보전금) 등 제도에 가입한 한우 농가에게 지급
 - (지원대상)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¹⁾

1)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표 1]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12년 조정)

• (발동기준) 기준가격(송아지 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및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 (보전금액) 발동시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10~40만원 지원 ※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기의 직전년도말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					
종전	2012년 개편 이후				
30만원	가임암소(만마리)	90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초과
	보전금(만원/마리)	40	30	1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은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송아지를 수매하여 가공·유통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토종유전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송아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송아지 수매, 송아지생산단지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송아지 사육 규모 및 적정 사육 마릿수, 송아지생산단지의 규모 및 그에 따른 운영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한우 송아지를 포함한 한우 시장의 경우 축종별 수급 상황, 소비자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수요·공급 변동성이 커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은 송아지생산단지 지정 요건·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1~'23년 기준 적정 송아지 사육규모를 초과하는 물량을 정부가 전부 시장가격으로 수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평균 3,4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표 2] 송아지 구매사업('21~'23년 기준) 재정 소요 추계액

구 분	2021	2022	2023	평균
1세미만 사육규모(A, 천마리)	1,008	1,028	931	989
1세미만 적정규모(B, 천마리)	900	900	900	900
구매 규모(C=A-B, 천마리)	108	128	31	89
송아지 평균가격(D, 천원)	4,336	3,619	3,162	3,706
소요예산(E=C×D, 억원)	4,692	4,635	977	3,435

주: 송아지 평균가격(D)은 송아지 6~7개월령 암수 가중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축산물 자급률 확보 및 가축경영안정사업(안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토종유전자원의 보호 및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가축을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표 3] 축산물(한우, 돼지) 생산비 구성 요소

① 가축비 ① 종부료 (한우 송아지)	② 사료비	③ 수도 광열비	④ 방역 치료비	⑤ 자동 차비	⑥ 농구비	⑦ 영농 시설비	⑧ 기타	⑨ 부산물 수입 (차감)			
경영비									⑩ 자가 노동비	⑪ 자본 용역비	⑫ 토지 용역비
생산비											

주: 기타재료비, 차입금이자, 토지임차료,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3년 평균 가축의 판매가격이 3년 평균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 그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축경영안정자금으로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축경영안정사업의 대상 범위, 생산비 산정 방식, 지급 기준, 차액보전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가축경영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와 가축경영안정자금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비용추계에 필요한 변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도축·출하장려금 지급(안 제32조의7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사육농가가 수급정책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해당 사육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축종별 도축·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대상 축종 및 지급두수, 축종별 지원단가, 지원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j,t} (\text{축종별 도축·출하 장려금})_{i,j,t} \\ &= \sum_{i,j,t} (\text{축종별 지급두수} \times \text{지원단가} \times \text{국비 지원율})_{i,j,t} \end{aligned}$$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축종(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 등),

j 는 지원금 종류(도축장려금, 출하장려금)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대상 축종 및 지급두수, 축종별 지원단가, 국비 지원율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변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3조 및 제47조²⁾에 근거하여 2022년에 성수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한우, 돼지에 도축수수료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2)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참고자료 2]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참고

□ 축산물의 소비촉진(안 제33조의4)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사업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홍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축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한 홍보 사업의 구체적 계획, 내용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현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조금단체에서 소비촉진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³⁾

※ 축산자조금(3731-302)-축산발전기금-22,692백만원(2025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이하 생략)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1]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입배경

- '90년대 중후반 무역개방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사육 규모가 급감**
함에 따라 한우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동 제도 도입('98)

* '95년 WTO 출범, '97년 IMF 사태, '01년 소고기 수입 개방

** 한육우 사육규모: ('96) 284만 마리 → ('01) 141만 마리 (한우는 '03년 이후 구분 가능)

< 법적 근거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 사업개요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보전금) 동 제도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급**(20~30만원 내외)

* 발동 기준가격은 '11년까지 경영비 이상 수준에서 책정(자가노동비 등 반영)

< '00~'08년 기준가격 현황 및 책정 사례 >

(단위: 천원)

구분	'00	'01	'04	'06	'07	'08
기준가격	900	1,200	1,260	1,300	1,550	1,650
경영비	791	787	1,006	1,079	1,171	1,527
생산비	1,401	1,443	1,945	2,079	2,142	2,467

※ '07년(1,550천원): '06년 경영비(1,079) + '06년 자가노동비(384) + 물가상승률(2.4%) + 농가불안심리 감안(52)

※ '08년(1,650천원): '07년 기준가격+물가상승률(3.3%)+농가불안심리 감안(50)

□ 현행 발동기준('12년 조정)

- (**발동기준**) 기준가격(송아지 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및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 (**보전금액**) 발동시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10~40만원 지원
※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기의 직전년도말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

가임암소(만마리)	90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보전금(만원/마리)	40	30	10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현황

- '08~'12년간 총 일곱 차례 발동되었으며, 송아지 85만마리를 대상으로 1,655억원 지급

구분	'08		'09	'11		'12		합계
	3분기	4분기	1기 (1~2월)	5기 (9~10월)	6기 (11~12월)	1기 (1~2월)	2기 (3~4월)	
지급대상(만마리)	22	15	7	16	11	7	8	85
지급액(억원)	381	297	95	156	329	206	191	1,655
지급단가 (만원/마리)	17.5	20.0	13.9	9.7	30.0	30.0	25.4	19.5 ^{평균}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 시 수급상황

- 한우 개체수(1세미만·가임암소·전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약세였던 시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발동

※ 가임암소: ('03) 605천마리 → ('08) 1,013('03년 대비 67.4% ↑) /
('08) 1,013천마리 → ('12) 1,227('08년 대비 21.1% ↑)

※ 1세미만: ('03) 427천마리 → ('08) 712('03년 대비 66.7% ↑) /
('08) 712천마리 → ('12) 877('08년 대비 23.2%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및 적립금 현황

- '24년말 현재 8천호가 동 사업에 가입, 총 155억원 적립

※ 농가가 동 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를 등록시키고 2만원을 지역 농축협에 납부(50% 지자체 지원)해야 함

구분	'01	'05	'10	'15	'20	'21	'22	'23	'24
가입호수(천호)	123	114	127	46	18	16	13	10	8
가입암소수(천마리)	383	619	1,007	376	135	117	92	65	49
적립금(억원)	118	330	365	95	134	138	142	144	155

[참고자료 2] 주요 축종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축장려금: 20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 재원: 국비 100%
- 지원대상: (한우) 암소, (돼지) 전체 도축마릿수
- 지원내용: 추석 성수기(8.22.~9.8.)에 도축한 한우 암소 및 돼지에 도축수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단가: 한우 103,000원, 돼지 10,300원
-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22년 추석 성수기 도축수수료 지원 내역>

구분	지원규모 (A, 천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한우 암소	22	103,000	2,262
돼지	936	10,300	9,642
합계	958	—	11,903

* 지원단가에 위탁수수료(3%) 포함

□ 출하장려금: 한우 암소 비육지원('21~)

- 재원: 한우자조금(국비 포함), 농협 자체자금
- 지원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경산우 및 경산우
- 지원내용: 일정 기한 내에 한우 암소를 비육하여 도축하면 지원금 및 보증씨수소 정액 지원(미경산우 20만원, 경산우 18만원(자조금 15+농협 3))

<한우 암소 비육지원 내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만)>

구분	지원규모 (A, 천 마리)	지원단가 (B, 원/마리)	지급액 (A×B, 백만원)
미경산우	15	200,000	3,000
경산우	20	180,000	3,600
합계	35	—	6,600